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관련 번 호 705

제안년월일: 2019년 8월 30일 제 안 자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오기로 인해 잘못된 조항에 규정된 분과위원회별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12조제2항에서 같은조제3항으로 옮기고,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관련 사항 중 현행 조례 제49조의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○ 각 호로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(안 제12조제3 항).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.

안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.

- 1.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2.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"분과위원장"이라 한다)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분과위원회 위원(이하 "분과위원"이라 한다) 중에서 호선한다.

안 제12조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 : 성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2.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: 노동환경 개선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: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정(제안)안
제7조(구성) ①・② (현	제7조(구성) ①・② (현	제7조(구성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	행과 같음)	행과 같음)
③ 당연직 위원은 기	③	③ (개정안과 같음)
획・경제・복지 등의		
업무를 담당하는 국장		
급 이상 <u>공무원 7명</u>	<u>공무원 중 시</u>	
이내로 하고, 위촉직	장이 지명하는 사람	
위원은 성평등정책에	10명	
관한 식견과 경험이		
<u>풍부한 자</u> 중에서 시		
장이 위촉한다.	<u>풍부한 사람</u>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분과위원회) ①	제12조(분과위원회) ①	제12조(분과위원회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② 1항의 분과회의는	②	② (개정안과 같음)
성주류화 분과위원	교육・문화 분과위원	
회, 정책개발 분과위	회, 노동・돌봄 분과	
원회, 성별영향분석	위원회, 젠더폭력예	
평가 분과위원회로	<u>방·안전 분과위원회</u>	
하고, 분과위원회에		
구성에 관한 사항은		
다음 각 호와 같다.		

현 행	개 정 안	수정(제안)안
1. 분과위원회는 위	 <u>1</u> . 교육·문화 분과	1. (현행과 같음)
원회의 위원 중에서	위원회 : 성평등 교	
위원장을 제외한 위	육, 성평등 문화 확	
촉직 위원으로 구성	산을 위한 정책 진단	
<u>한다.</u> 2. 분과위원회의 위	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노동・돌봄 분과	<u>2. (현행과 같음)</u>
원장(이하 "분과위원	위원회 : 성별임금격	
<u>장"이라 한다)은 분</u>	차 해소 등 성평등	
과위원회의 업무를	노동 정책, 틈새 없	
총괄하며 분과위원	는 돌봄 정책 진단	
회 위원(이하 "분과	및 조정에 관한 사항	
위원"이라 한다) 중		
에서 호선한다.		
<u><신 설></u>	3. 젠더폭력예방·안	<u><삭 제></u>
	전 분과위원회: 젠더	(현행과 같음)
	폭력 예방 및 대응 정	
	책, 여성 안전 관련	
	정책 진단 및 조정에	
	관한 사항	② (컨케키 키 O)
③ 분과위원회는 다음	3	③ (현행과 같음)
각 호의 구분에 따라		
소관 사항을 심의·의		
결한다.		
1. 성주류화 분과위	<u>1. (현행과 같음)</u>	<u>1. 교육·문화 분과</u>

첫 체	기 7 시	스 기 (케이) 이
현 행	개 정 안 	수정(제안)안
원회 : 성인지예산,		위원회: 성평등 교육,
성인지통계 등 성주		<u>성평등 문화 확산을</u>
류화정책 과제 진단		위한 정책 진단 및
및 조정에 관한 사항 2. 정책개발 분과위	2. (현행과 같음)	<u>조정에 관한 사항</u> 2. 노동·돌봄 분과
원회 : 보육, 일자리,		위원회 : 노동환경 개
안전, 일가족 양립		선정책, 틈새 없는 돌
등 여성가족정책 제		봄 정책 진단 및 조정
안 및 개선에 관한		에 관한 사항
사항		
3. 성별영향분석평가	3. (현행과 같음)	3. 젠더폭력예방·안
분과위원회 : 조례의		전 분과위원회: 젠더
제·개정, 정책, 사업		폭력 예방 및 대응 정
및 제35조의2제1항에		책, 여성 안전 관련
따른 성별영향분석평		정책 진단 및 조정에
가에 관한 사항		관한 사항
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	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	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
영 등) ① (생 략)	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	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젠더자문관의 업무	②	② (현행과 같음)
범위는 다음 각 호와		
같다.		
 성인지 강화 계획 	1. 성평등 정책 발굴	<u>1. (개정안과 같음)</u>
수립 및 성평등 정	및 자문	
<u>책 발굴</u> 2. 주요사업 계획수립	2	2. (개정안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	수정(제안)안
과정에서의 자문 및		
협의	협의(시장이 따로	
	정하는 사업에 대한	
	사전검토를 포함한	
	<u>다)</u>	
3. 주요사업 추진실적	3	<u>3. (개정안과 같음)</u>
평가, 환류 및 보고	평가 및 환류	
<u>서 작성</u>	4 도 / 원 웨 카 - 카 ㅇ)	4 - F /원웨코 코 O V
4. ~ 5. (생 낙)	4. ~ 5. (현행과 같음)	4. ~ 5. (연앵과 숱음)
제36조(성인지 예산서	제36조(성인지 예산서	제36조(성인지 예산서
및 성인지 결산서 작	및 성인지 결산서 작	및 성인지 결산서 작
성) 시장은 예산이 여	성)	성) <u>(개정안과 같음)</u>
성과 남성에게 미치는		
영향을 분석하고, 「지		
방재정법」 제36조의2		
및 <u>같은 법 제53조의2</u>	「 <u>지방회계법」제18</u>	
에 따라 이를 재정운	<u> 조</u>	
용에 반영하는 성인지		
예산서 및 성인지 결		
산서를 작성하여야 한		
다.		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.

제7조제3항 중 "공무원 7명"을 "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"으로 하고, "풍부한 자"를 "풍부한 사람"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중 "성주류화 분과위원회, 정책개발 분과위원회,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"를 "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,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,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 : 성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2.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: 노동환경 개선정책, 틈새 없는 돌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- 3.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회: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

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"협의"를 "협의(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를 포함한다)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"평가, 환류 및 보고서 작성"을 "평가 및 환류"로 한다.

1.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

제36조 중 "같은 법 제53조의2"를 "「지방회계법」 제18조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했 개 정 힞} 혅 제7조(구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제7조(구성) ① • ② (현행과 같음)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·경제· ③ --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급 이상 공무원 7명 이내로 하고. -----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 위촉직 위원은 성평등정책에 관 하는 사람 10명 -----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 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생 략) 제12조(분과위원회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1항의 분과회의는 성주류화 ② ----- 교육·문 분과위원회, 정책개발 분과위원 화 분과위원회, 노동·돌봄 분 과위원회, 젠더폭력예방·안전 회,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 회로 하고, 분과위원회에 구성에 분과위원회 ----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3. (생 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소관 사항을 심의 의결 하다. 1. 성주류화 분과위원회 : 성인 1. 교육·문화 분과위원회 : 성 지예산,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 평등 교육, 성평등 문화 확산을 화정책 과제 진단 및 조정에 관 위한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항 한 사항 2. 정책개발 분과위원회 : 보육, 2. 노동·돌봄 분과위원회 : 노

- 일자리, 안전, 일가족 양립 등 여성가족정책 제안 및 개선에 관한 사항
- 3.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 회:조례의 제·개정, 정책, 사업 및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성별 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사항
- 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 (생 략)
 - ② 젠더자문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성인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성 평등 정책 발굴
 - 2. 주요사업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자문 및 **협의**
 - 3. 주요사업 추진실적 **평가, 환류** 및 보고서 작성

4. ~ 5. (생략)

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)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「지방재정법」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동환경 개선정책, 틈새 없는 돌
봄 정책 진단 및 조정에 관한 사
<u>항</u>
3. 젠더폭력예방·안전 분과위원
회 : 젠더 폭력 예방 및 대응 정
책, 여성 안전 관련 정책 진단
및 조정에 관한 사항
제13조(젠더자문관의 운영 등) ①
(현행과 같음)
2
1. 성평등 정책 발굴 및 자문
2
정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검토
를 포함한다)
3 <u>평가 및 환</u>
<u>류</u>
4. ~ 5. (현행과 같음)
제36조(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
산서 작성)
「 <u>지방회계법」제18조</u>
•